	학 생 생 활 상 담 소 규 정	규정번호	KTC-G-05	1/3
		제정일자	2013.03.07	
		개정일자	2015.09.04	
		관리부서	학생생활상담소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 및 소재) 본 상담소는 강원관광대학교 부속 학생생활상담소(이하 “생활상담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생활상담소는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하여 대학생들의 개인적 문제의 해결과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, 학생생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업무) 생활상담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① 상담분야

1.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
2.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
3.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
4. 상담실습지도
5. 기타 상담에 관련된 활동

② 연구분야

1. 학생생활에 관한 문제의 조사 및 연구
2. 상담 및 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
3.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연구지의 발간
4. 기타 연구에 관련된 활동

③ 교육분야

1. 인간관계훈련을 통한 생애 및 자아개발 프로그램
2. 진로탐색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
3.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
4. 정신건강 세미나
5. 연수 및 기타 교육에 관련된 활동

제 2 장 조직과 운영

제 4 조 (임원) 생활상담소에는 소장,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제 5 조 (소장) ① 생활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,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.
② 소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직급은 학과장급으로 한다.

제 6 조 (전문상담원) ① 전문상담원은 상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5.09.04)
② 학생의 전반적 생활지도 상담 및 연구를 담당한다.

제 7 조 (직원) ① 생활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직원의 임명은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 8 조 (운영위원회) ① 생활상담소의 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, 개정 및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등 중요한 사업의 심의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, 전문상담원 및 총장이 위촉한 전임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자문위원회) ① 생활상담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얻기 위하여 상담 관련 분야의 외부인사 약간 명을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
②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10 조(임기) 생활상담소의 소장 및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 11 조 (재정) 생활상담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기여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12 조 (예·결산 및 사업보고)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,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3 조 (회계연도) 생활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14 조 (운영세칙) 생활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.